

가입 후 무사고 고객 계약전환 특약

제 1조 [목적]

제 2조 [용어의 정의]

제 3조 [계약전환 시 알릴의무]

제 4조 [계약전환 시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제 5조 [계약전환의 적용대상]

제 6조 [계약전환의 안내]

제 7조 [계약전환의 적용]

제 8조 [계약전환에 관한 세부규정]

제 9조 [준용규정]

가입 후 무사고 고객 계약전환 특약

제 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 별도로 정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해당계약: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주계약 또는 특약을 말하며, 특약의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와 동일한 경우에 한합니다.

2. 계약전환 관련 용어

- 가. 전환 전 계약: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간편심사형 계약을 말합니다.
- 나. 전환 후 계약: “전환 전 계약”에 대하여 제7조(계약전환의 적용) 제1항에 따라 계약전환이 이루어진 경우의 계약을 말합니다.
- 다. 계약전환 신청 가능 기간: 계약자가 이 특약에 따라 회사에 계약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최초 계약체결 시 가입한 간편심사형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최초계약	계약전환 신청 가능 기간
간편심사형(305)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8년이 경과한 날 이전까지
간편심사형(315)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날 이전까지
간편심사형(325)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날 이전까지
간편심사형(335)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 이전까지
간편심사형(345)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날 이전까지
간편심사형(355)	계약전환 불가

- 라. 특정질병: 최초 보험계약 시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진단, 입원 또는 수술 여부를 질문한 질병을 말합니다.

제 3조 [계약전환 시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전환을 신청할 때 ‘계약전환 시 알릴의무 사항’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 4조 [계약전환 시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조(계약전환 시 알릴 의무)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회사는 계약전환을 무효로 하며 “전환 전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 5조 [계약전환의 적용대상]

- ① “전환 전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계약전환의 대상으로 합니다.
 1. 전환 신청 시 연체된 보험료가 없는 유효한 계약
 2. 피보험자의 무사고 기간이 변경되어 위험이 감소된 계약
 3. 해당계약의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간편심사형(355)’ 유형이 아닌 계약
- ② 제1항 제2호에서 “무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최초 보험계약일(갱신형의 경우 최초계약의 계약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도 최초 보험계약일(갱신형의 경우 최초계약의 계약일)로 합니다. 이하 “최초 보험 계약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질병 및 사고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지 않은 경우
 2. 최초 보험계약일 이후에 “특정질병”으로 진단받지 않은 경우
- ③ 제1항 제2호에서 “무사고 기간”이라 함은 최초 보험계약일로부터 제2항에서 정한 “무사고”상태가 계속하여 유지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무사고 기간”의 산정은 최초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전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 6조 [계약전환의 안내]

- ① 회사는 계약전환 신청 가능 기간 종료일 전까지 매년 1회 이상 계약자에게 관련 내용(계약전환 요건 및 계약전환 절차 등)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계약전환의 적용대상)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계약에 대하여는 관련 안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전환 신청 가능 기간 동안 계약자의 계약전환 신청이 없는 경우(계약자와의 연락두절로 회사의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계약전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 7조 [계약전환의 적용]

- ① 계약자는 계약전환 신청 가능 기간 동안 회사에 계약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 5조(계약 전환의 적용대상) 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전환을 승낙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약전환을 승낙할 경우 “전환 후 계약”으로 계약을 전환하며, 회사가 계약전환을 거절할 경우에는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전환 후 계약”은 최초 계약 시 가입한 간편심사형의 유형 및 “무사고 기간”에 따라 아래 표에 따른 유형의 간편심사형 계약을 적용합니다.

최초계약	최초계약
------	------

체결시	무사고기간 (1년)	무사고기간 (2년)	무사고기간 (3년)	무사고기간 (4년)	무사고기간 (5년)
간편심사형(305)	간편심사형(315)	간편심사형(325)	간편심사형(335)	간편심사형(345)	간편심사형(355)
간편심사형(315)	간편심사형(325)	간편심사형(335)	간편심사형(345)	간편심사형(355)	
간편심사형(325)	간편심사형(335)	간편심사형(345)	간편심사형(355)		
간편심사형(335)	간편심사형(345)	간편심사형(355)			
간편심사형(345)	간편심사형(355)				계약전환 불가
간편심사형(355)	계약전환 불가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전환 후 계약”의 보험기간은 “전환 전 계약”의 잔여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전환 후 계약”은 아래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전환 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전환됩니다.

1. 보장내용
2. 갱신/비갱신 유형
3. 해약환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기본형/해약환급금 미지급형)
4. 간편심사 유형 변경을 제외한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제 8조 [계약전환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7조(계약전환의 적용) 제1항에 따라 계약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계약전환 승낙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험료를 변경하여 적용하며, “전환 전 계약”의 계약자적립액과 “전환 후 계약”의 계약자적립액의 차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하 ‘정산차액’이라 합니다)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4조(계약전환 시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에 따라 계약전환이 무효가 된 경우 계약자는 제1항의 지급된 정산차액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전환 전 계약”의 유지를 위하여 전환 전 보험료와 전환후 보험료의 차액(이하 ‘증액보험료’라 합니다.)의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계약자는 이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증액보험료의 추가납입 또는 정산차액 반환이 연체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해당 금액을 보험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④ 제7조(계약전환의 적용) 제1항에 따른 계약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계약 전체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환 전 계약”에서 해당계약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계약은 계약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전환 전 계약”에서 해당계약이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전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계약 전체에 대한 계약전환을 무효로 하며, 회사는 효력이 없어진 이후 납입한 해당계약의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반환합니다.

⑥ 최초계약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사기에 의한 계약’ 조항은 “전환 후 계약”에서도 효력이 계속됩니다.

제 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계약”의 약관을 준용합니다.